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 안	661
번 호	

제출년월일 : 2001. 5. 2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 안 이 유

내수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육성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함(안제1조)
- 나.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어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함(안제3조)
- 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안제7조)
- 라.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제9조)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고 이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심의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위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등)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담당으로 한다.

제7조(회의개최)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의 배부)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파주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축산과 ☎940-4592
입안자	농축산과장	박신규
	축산환경담당	현상무
	담당자	박영철